

광주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2 - 7호

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

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1월 28일

광주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

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: 15명

시험명	직렬 (직류)	구분	직급	선발 예정인원	필기시험과목(1·2차 병합실시)
제 1 회 공개경쟁 임용시험	간 호 (간 호)	일 반	8급	15	필수(5) : 국어, 영어, 한국사, 간호관리, 지역사회간호

2 시험방법

가. 제1·2차 시험(병합실시) : 선택형 필기시험(매 과목 100점 만점, 4지 택1형 20문항)

나. 제3차 시험 : 면접시험

※ 서류전형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자격, 가산점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, 제1·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

3 필기시험시간 및 합격자 결정방법

가. 필기시험시간 : 10:00 ~ 11:40 (5과목, 100분)

나. 합격자 결정방법 : 각 과목 만점의 40% 이상 득점한 자 중 총득점이 높은 순

※ 구체적인 합격자 결정방법 등은 『지방공무원 임용령』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4 응시자격

가. 응시 결격사유 등(기준일 :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)

○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, 제66조(정년)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

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에 해당되지 않고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

○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○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6조(정년)

1.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.
2.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,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.

○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
-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
-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 1. 공공기관
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 4.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

나. 거주지 제한(다음 ①과 ②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응시가능)

- ①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 시행예정일(면접시험 최종예정일)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(재외국민에 한함)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
 - ※ 동일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
- ② 2022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(재외국민에 한함)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
 - ※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은 제외함
 - 행정구역의 통·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·군·구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,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(月)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
 - ※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“개인별주민등록표”를 기준으로 함

다. 성 별 : 제한 없음

라. 응시연령 : 18세 이상(2004. 12. 31. 이전 출생자)

마. 자격요건(자격면허증은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해야 함) : 조산사, 간호사

5 시험문제 출제방법 및 공개여부

- 당해 시험문제는 인사혁신처에 위탁 출제하며, 공개 문제이므로 시험 종료 후 문제책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.

6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

응시원서 접수기간 (최소기간)	구 분	시험장소 공 고 일	시 험 일	합격자 발표일
2022. 2. 21.(월) 09:00부터 2022. 2. 25.(금) 18:00까지 (마감일을 제외한 기간 내 24시간 접수) (최소기간 : 2022. 2. 21. ~ 2. 28.)	필기시험	2022. 4. 8.(금)	2022. 4. 30.(토)	2022. 5. 18.(수)
	면접시험	2022. 5. 18.(수)	2022. 5. 25.(수)	2022. 5. 31.(화)

- ※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, 시험장 사정,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으며, 시험 단계별 합격자 및 서류전형,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(<http://www.gwangju.go.kr>) 「시험인사정보」에 별도 공고할 예정임
- ※ 필기시험 성적 열람과 관련하여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부터,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시부터 각각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(<http://local.gosi.go.kr>)에서 본인의 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음(전화 확인은 불가,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전 성적 사전공개 및 문의기간은 필기시험 장소 공고 시 별도 안내 예정)

7 응시원서 접수(인터넷 접수만 가능)

가. 접수방법

-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(<http://local.gosi.go.kr>)를 통하여만 접수합니다.
- ※ 응시원서 접수와 관련된 문의 : 인터넷원서접수센터(☎ 1522-0660)

나. 접수시간

- 응시원서 접수시간은 시작일 09:00 ~ 종료일 18:00(접수기간 내에는 24시간 가능)

다. 응시수수료 등

- 응시수수료 : 5천원

-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(휴대폰, 카드결제, 계좌이체 등)이 소요됩니다.
-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에 취소한 경우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.
- ※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(응시원서 접수 시 사전결제 및 수수료 면제 신청, 원서접수 종료 후 관계기관에 자격여부 확인 후 환불 예정)

라. 사진등록

- 응시원서 접수 시 등록용 사진파일(JPG)이 필요하며 접수완료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.
-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 규격은 3.5cm×4.5cm(해상도는 100dpi 이상),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.
(특히 모자 또는 선글라스 착용, 배경사진, 측면사진 등은 불가)
- 응시원서에 등록한 사진은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가급적 원판보유 사진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.

마. 원서접수 유의사항

- 원서접수 기간 내 기재사항의 수정은 가능합니다.
- 응시표는 원서접수·취소기간 만료 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원서접수센터(<http://local.gosi.go.kr>)에서 본인이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하여야 합니다.
- **동일 날짜에 전국 동시 시행하는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응시원서는 1개 기관의 1개 시험에만 접수 가능하며,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접수 할 수 없습니다.**
- 응시자격 제한,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등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응시원서 접수 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라며, 누락·착오 입력 시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.

8

양성평등 임용목표제

가. 임용목표 : 30%

- 당해시험은 직급·직렬(직류/구분)별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으로 양성평등 임용목표제를 적용합니다.
-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,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며,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.

나. 실시방법

- 어느 한 성(性)의 합격자가 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(性)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선발합니다. [하한성적 : (합격선 - 3점) × 과목수]

- ※ 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해당 성(性)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(性)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

9 추가합격자 결정

-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
10 시험에 있어서 가산특전(적용 기준일 : 당해 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유효한 경우)

가. 가산점 적용 대상자 및 가산비율

구 분	가 산 비 율	비 고
취업지원대상자 (선발예정인원 4명 이상시 적용)	과목별 만점의 5% 또는 10%	. 취업지원대상자와 의사상자 등 대상자 가산점이 모두 해당할 경우,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선택 . 가산 특전은 각 과목 만점의 40% 이상 득점 시 적용 .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「나~라」 참고
의사상자 등 대상자 (선발예정인원 10명 이상시 적용)	과목별 만점의 3% 또는 5%	

나. 취업지원대상자(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경우에 한함)
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,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2항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, 「5.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0조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는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%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(5% 또는 10%)을 가산합니다.
- 가산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직렬(직류/구분)별 선발예정 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 -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

※ 본인의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함(보훈상담센터 ☎1577-0606)

다. 의사상자 등 대상(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경우에 한함)

○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4조의2에 따라 의사상자 등 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 만점의 40%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(3% 또는 5%)을 가산합니다.

○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4조의2 및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56조에 따라 의사상자 등 대상 가산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10%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
-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

※ 본인의 의사상자 등 해당여부와 가산비율은 보건복지부(☎044-202-3258) 등에 사전 확인해야 함

라.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

○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모든 응시자는 해당요건을 갖추어 원서접수일부터 필기 시험일 전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(<http://local.gosi.go.kr>)에 가산점의 종류 및 보호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.(필기시험 답안지에는 ‘가산점 표기란’이 없음)

- 제1회 임용시험 가산점 등록기간 : 2. 21.(월) ~ 4. 29.(금)

※ 가산점 종류, 보호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
11

응시자 유의사항

가.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으며, 장애인 편의지원을 원하는 수험생은 「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제공 지원안내【붙임】」를 참고하여 반드시 원서접수 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, 구비서류 제출 대상자는 원서접수 취소마감일까지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.

나. 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,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유효한 여권이나 장애인등록증 중 1개), 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 시작 40분전(09:20)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.

다. 응시자는 응시표 및 답안지 작성요령,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,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.

라.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이나 중복지원, 거주지 제한 미확인, 자격미비자의

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
- 마.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,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,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장비(휴대폰, PMP, MP3, 무선호출기 등) 및 전자기기(전자계산기, 전자수첩 등)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.
- 바.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『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』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펜을 사용하지 않거나, 예비표기를 한 경우는 해당 문항이 0점 처리될 수 있습니다.
- 사.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의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, 과목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아. 필기시험 합격자는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등 관련 증빙서류를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,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자. 부정행위자 등에 대하여는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에 따른 시험과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.
- 차.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카.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(<http://www.gwangju.go.kr>)에 공고합니다.
- 타. 기타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광주광역시 인사정책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(광주광역시 인사정책관 인재채용팀 ☎ 062-613-6281~5)

본 공고문의 내용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(<http://www.gwangju.go.kr>) 및 모바일 광주 앱을 통해서도 열람 할 수 있습니다.

[PC :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→ 시정소식 → 시험인사정보 → 우리시공무원]

[모바일 :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 또는 iOS 앱스토어에서 '모바일광주' 검색 후 설치]

붙임 :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제공 지원안내 1부. 끝.